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피해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일상복귀 명시 등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72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피해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일상복귀 명시 등	3
2. 학교의 장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직권 부여	13
3. 피해학생 등 요청 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배정 의무화	18
 [참고자료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운영 계획(요약) ...	22
[참고자료 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현황	23
[참고자료 3] 통합지원 전문기관(학교폭력제로센터) 개요	2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30.

3. 회부연월일 : 2026. 3. 31.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선도, 피해학생의 사후적 보호에 중점을 두는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 등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병원이나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고, 연계 시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 등은 이를 지체 없이 피해학생 등에게 안내·연계하여야 함(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피해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일상복귀 명시 등(안 제4조제2항, 제16조제6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①피해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일상복귀를 명시하고, ② 심리 지원이 필요한 피해학생에 대해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등을 연계함으로써 치유·회복·일상복귀 중심의 피해학생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4조제2항, 제16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u>보호</u>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 ----- ----- --- <u>보호(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 ----- -----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⑤ (생략)

<신 설>

-----요청하거나 학
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
한 조치(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하
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심리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대통령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
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
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
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
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
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령으로 성하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병원(이하 “전문단체등”이라 한다)이나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단체등이나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 제7항에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일상복귀를 위하여 ①치료·재활 등 피해학생 지원 관련 계획 수립·시행, ②피해학생 지원기관 운영, ③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조언, 치료 등), ④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등 각종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치유·회복·일상복귀 지원 관련 현행법 규정]

규정	내용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제1항·제2항1))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운영 (제6조의2제1항2))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등을 하는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교육부)
상담·치료·교육 기관 지정 (제10조제5항3))	상담·치료(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 지정(교육청)
통합지원 전문기관 운영 (제11조제9항4))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등 통합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운영(교육청)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6조제1항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제16조의36))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 1)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 2) 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① 국가는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⑤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4)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5)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치유·회복·일상복귀 지원은 실제로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데, 시·도 교육청에서는 25년 기준으로 학교폭력제로센터(통합지원 전문기관) 176개 및 상담·치료 교육 기관 922개를 운영하고 있음.

- 참고로,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확대할 계획임.

[피해학생 지원기관 개요 및 현황]

구분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상담·치료·교육 기관	통합지원 전문기관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지정) 주체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감
업무	①학생 치유·회복 보호 시설 운영, ②학생 치유·회복에 관한 연구·교육	상담·치료,보호	①학교폭력 사안조사, ②피해학생 치유, ③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④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⑤ 사안처리 컨설팅 등
현황	'26년 서울,인천 설립 추진 중	922개('25)	176개('25)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제6조 의2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제11 조제5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제11 조제9항

* 자료: 교육부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그런데 최근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심리 상담 및 치료 건수가 증가하는 등 피해학생 다수가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이 자아정체성·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 자살충동, 성인 이후 사회적 고립 등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분석 결과도 보고되고 있는바⁷⁾, 가해학생의 처벌 중심이 아닌 피해학생의 치료·회복 중심으로 학교폭력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참고로, 2023년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학회 소속 전문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1.4%가 학교폭력이 중단된 이후에도 수년간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을, 62.7%가 성인 이후에도 후유증이 지속된 환자들을 진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⁸⁾.

[최근 3년간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단위: 건, 기준: '26. 2. 28.)

구분	일시보호(2호)	심리 상담 및 조언(1호)	치료 및 요양(3호)
2023	580	14,151	2,488
2024	573	14,760	2,498
2025	502	12,779	2,155

* 자료: 교육부

□ 이에 개정안은 ①피해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일상복귀를 명시하고, ②심리 지원이 필요한 피해학생에 대해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등을 연계함으로써 치유·회복·일상복귀 중심의 피해학생 지원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시 치유·회복·일상복귀에 관

7)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p. 8,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 “학교폭력 실상 진료실에서도 확인…전문의 78.5% ‘경험’”. 의협신문. 2023.03.17.

한 사항이 명확히 제공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피해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일상복귀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 그 필요성 및 개정 취지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라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일상복귀”이 명시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들을 다음과 같음.

[개정안에 따라 “치유·회복·일상복귀”가 명시되는 규정]

구분	규정
민간의 피해학생 보호 활동 등 장려 대상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u>보호</u>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u>보호</u>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피해학생의 <u>보호</u>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u>보호</u> 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목적 등	제16조(피해학생의 <u>보호</u>)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u>보호</u>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u>보호</u>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장애학생 대상 전문가 상담 및 요양 조치 요청 목적	제16조의2(장애학생의 <u>보호</u>)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u>보호</u> 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업무 범위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u>보호</u>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구분	규정
가해학생 조치 목적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u>보호</u> 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u>보호</u> 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교육자치법 특례 대상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u>보호</u> ,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①개정안이 적용되는 규정은 이미 치유·회복·일상복귀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②타 규정에서도 피해학생 지원 및 보호 사항으로 치유·회복·일상복귀를 다수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기대 입법효과는 단순히 법률에 명시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바, 이는 입법 효과가 크지 않고, 치유·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정책전환이라는 개정 취지와도 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행법 제6조⁹⁾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 설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바,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에 ‘치유·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선제적 대응 방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음.

둘째, 피해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등 연계 규정의 경우 피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해학생 보호조치 및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16조 및 제16조의3¹⁰⁾에서는 이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①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하나로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고, ②보호조치 관련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③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관련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피해학생의 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를 장려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호’의 범위에 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할 경우 하위 집행 조항과의 충돌가능성, 일선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 ‘보호’에 한하여 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하도록 한정할 필요하다는 입장임.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⑤ (생략)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시·도교육청(대전)

- 회복 기준의 경계 모호, 장기적 지원의 한계로 인한 업무 과중, 민원 증가 등으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가. 개정안의 요지

- | 현행 | 개정안 |
|---|--|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

-----,

----- |

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병원(이하 “전문단체등”이라 한다)이나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단체등이나-----

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7항에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6조제1항¹¹⁾에 따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요청에 따라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학교의 장이 분리조치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학급교체 외 보호조치의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요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학교의 장은 위와 같이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직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데,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없으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적시성을 저해하고,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게 한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학급교체 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학교의 장이 보호조치가 시급한 피해학생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⑧ (생략)

적시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피해학생이 정보 부족 등으로 보호 요청을 못하는 경우에도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임.

○ 시·도교육청(부산, 강원)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의 장애 대한 면책 근거 마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심리상담, 치료가 사실상 관행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3. 피해학생 등 요청 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배정 의무화 (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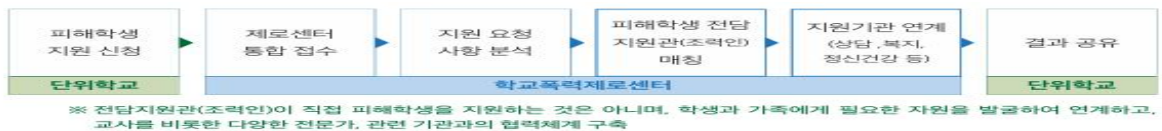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생략) <u><신설></u> <u>②·③</u> (생략)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현행과 같음) <u>②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를 지체 없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안내·연계하여야 한다.</u> <u>③·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6조의3 및 시행령 제18조의2¹²⁾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사회복지사, 교원, 경찰공무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 관련 전문가를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은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배정 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①피해학생 지원 신청, ②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통합지원 전담 부서인 학교폭력제로센터¹³⁾ 접수, ③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배정 순으로 진행됨.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절차]



* 자료: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라.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생략)

② ~ ④ (생략)

13)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피해학생의 치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자문, 사안처리 컨설팅 등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

□ 그런데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배정에 대해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신청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배정 여부 또한 교육감 등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교육감 등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피해학생이 조력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2년간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구성 및 지원 현황]

(기준: '26. 2. 28.)

구분	구성 현황							지원 건수
	퇴직교원	현직교원	퇴직경찰	심리상담 전문가	사회복지사	기타	소계	
24학년도	136 (11.6%)	219 (18.7%)	139 (11.9%)	364 (31.1%)	51 (4.3%)	259 (22.1%)	1,168명	3,140
25학년도	149 (11.4%)	245 (18.7%)	138 (10.5%)	366 (28%)	68 (5%)	340 (26%)	1,306명	6,308

* 자료: 교육부

□ 이에 개정안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피해학생이 조력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도록 하여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력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 조력인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임.
○ 시·도교육청(대전, 강원)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조력인 인력풀 확보 문제, 행정적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87

참고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운영 계획(요약)

☐ 추진 배경

- 피해학생의 치유 회복과 원활한 학업·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질 높은 교육 치유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선도모델 발굴 필요

☐ 주요 기능

〈개요〉

- **(개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심리·정서 위기 학생의 치유·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교육기관**'(「학폭법」 제6조의2)
- **(주요 기능)** 피해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피해학생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상담·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 **(주요 시설)** 교과교실, 대안교육을 위한 활동실, 개인·집단 상담실, 심리검사실, 북카페, 기숙사, 휴게실, 식당 등

※ 시설의 경우 기관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세부 주요 기능〉

- **(보호시설 운영)** 가해학생과 분리된 환경에서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관리**
-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초·중·고등학교과정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 **(상담 및 치유 회복)**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가족상담, 원적교 복귀 후 추수상담과 진로상담 등 제공
- **(국가수준 연구 협조)** 학생 치유·회복 관련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적용, 효과성 적용, 추적 조사 등 국가 수준 연구 사업에 협조
- **(유관기관 연계 모델 발굴·확산)** 시도교육감 지정 전문지원기관 등

☐ 설치·운영 지원

- **(교육청 설치)**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활용 기관 설립
- **(교육부 운영 지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활용 운영 지원

참고 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현황

(‘2025년 기준)

구분	Wee센터			Wee 스쿨	병의원	민간상담· 심리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기타*	계
	일반	가정형	병원형						
기관수	194	8	1	7	116	525	42	29	922

□ 추진 배경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23.4.12.)
 -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사안처리, 피해회복, 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지원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 발표('23.12.7.)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추진 근거]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 ▶ '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계획('23.12.)

□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현황

- (제로센터) 총 176개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 운영 중

* (세종) 학생화해중재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그 외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

[시도별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 수	11	5	5	5	2	2	2	1	25	17	10	14	14	22	22	18	1

□ 학교폭력 제로센터 주요 사업

- ①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관리(역량강화, 사안조사 배정, 활동비 지급 등), 피·가해측 면담 및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운영 등
- ② **(피해회복 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조력인) 위촉·관리,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을 통한 실질적 필요 서비스 확인 및 전문기관 연계
- ③ **(관계개선 강화)** 관계개선 지원단 위촉·관리,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생활 정상화·적응 지원
- ④ **(피해학생 법률 지원)** 법률 지원단 위촉·관리, 가해학생측이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불복 시 피해학생 대상 법률 자문 등 지원
- ⑤ **(사안처리 컨설팅)**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컨설팅단'을 추가하여 학교의 사안처리 초기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 등 조력
- ⑥ **(전담조사관, 지원단 법률 자문지원)** 전담조사관, 지원단 등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아동학대로 신고·고발되어 입건 또는 피소 시 법률 지원(변호인 선임비용, 상담·자문 등)